

1. 서문

규율 및 징벌이 구금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밀수용·대형시설 등으로 처우가 보안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용자 처우에 중심이 되고 있고 교정의 이념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규율 및 징벌은 수용자에게 형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교정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수용자 규율 및 징벌 관련 규정과 실태상의 문제를 검토해보자 한다.

한편,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불만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불복제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즉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불복제도 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교도관의 입장에서는 수용자들의 불복으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행 불복제도의 내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그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2. 수용자 규율 및 징벌1)

가. 관련규정

(1)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행정법

1) 징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관련 규정을 나열했음.

제14조 제3항 :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징벌】 ①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흥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금치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증,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 【징벌위원회】 ①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8조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 ① 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48조의2 【징벌집행의 유예】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방법 등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

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행형법시행령

제140조 【징벌위원회의 소집】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41조 【징벌위원장의 대리】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2조 삭제 <95.8.26>

제143조 【징벌혐의자의 수용】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144조 【징벌의 선고자】 징벌은 당해 소장이 이를 선고한다.

제145조 【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정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6조 【징벌집행중의 건강진단】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47조 【징벌집행의 정지 등】 ① 소장은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당일에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48조 【징벌집행종료와 진단】 소장은 금치를 받은 자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49조 【징벌기간의 계산】 ① 징벌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이송으로 인하여 인수한 소장은 인수 후 3일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피호송자에 대한 징벌】 수용자가 이송도중에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징벌한다.

제151조 【징벌의 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신분장부 및 징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수용자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용규칙이라고만 합니다)

수용규칙에서는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징벌양정 참작사항, 가중 사항, 조사절차, 징벌절차, 징벌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징벌 집행 실태

(1) 2001년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징벌 종류별 집행현황을 아래와 같다.

구분 연도	징벌건수	처리 결과					
		금치2월 이하	금치1월 이하	금치20일 이하	청원작업 정지	도서열람 제한	경고
1999년도	8,707	3,747 (43%)	3,699	293	1	2	965
2000년도	9,994	4,588 (45.9%)	4,161	211			984
2001년7월 말	7,127	2,871 (40.3%)	3,666	91			499

(2) 그리고 2000년 징벌유형을 살펴보면 싸움, 폭행이 3,704건, 지시 및 입실거부가 1,780건, 부정물품 제작·소지 등이 1,069건, 소란·난동이 1,026건, 작업거부가 471건, 교도관 폭언·폭행이 390건, 자살기도가 359건, 부정연락이 169건, 지장장소이탈이 141건, 갈취 49건, 추행 41건, 기타 745건으로 나타났다.

다. 규율에 대하여(특히 징벌 요건인 규율에 대하여)

(1) 수용자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규율) 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도관(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폭언·폭행·협박·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의2.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단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또는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되지 아니하는 금품을 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음주 또는 흡연하거나 주류 또는 담배를 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6. 소란·난동을 부리거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여서는 아니된다.
7.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신입자에 대하여 규율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 등으로 폭행·협박·희롱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허가없이 물품을 제작, 소지,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도주를 모의하거나 허가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12. 도박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화투등 물품을 제작·수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인화물질을 제작·소지·수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하거나 기망 또는 협박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입실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6.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거나 추행 그 밖의 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허가없이 수용자 상호간에 소지품 또는 급여품을 교환하거나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18. 시설·급여품 기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품을 손괴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나거나 부정한 모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 자살기도, 자해, 이물질 취식 또는 문신을 하거나 기타 신체적 기능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허가없이 서신, 접견,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자기 또는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구를 함부로 풀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작업기재를 손괴하거나 작업 및 취사용 재료 등을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실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하는 등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26. 실내에서 취침시간외에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된다.
27. 수용자번호표·거실표·작업장표지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자기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을 부착 또는 이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28. 거실, 작업장 등 일상생활 장소의 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벽 등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9. 교도소등을 방문한 외래인 등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0. 허가없이 의류등 급여품을 변형 사용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31. 허가되지 아니한 도서를 입수하거나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32. 취침시간에 독서·신문열람·집필 또는 오락 등으로 다른 수용자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3. 집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4.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는 수용자는 당해 기업체 등의 근로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 또는 희롱하여서는 아니된다.
35. 제1호 내지 제34호외에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율사항은 구금시설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장소내에서의 단체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겠지만, 그것이 징벌로 연결될 때에는 규율 규정 형식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2) 우선, 규정형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징벌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고, 하위법규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징벌법정주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고 함)²⁾이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³⁾(이하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이라고 함)등에서도 공통으로 규율위반 행위(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법률이나 권한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에 징벌권이 발동될 것인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행형당국의 자의적인 징벌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1995년 개정 전 행형법에서는 규율위반 행위를 법무부장관에게 모두 위임하였으나, 개정 행형법 제46조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행형법 제46조에서 징벌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4가지를 열거한 뒤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이나 범위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벌요건 사항을 하위 법규에 모두 위임하고 있다. 더구나 위 규칙 제3조 제35호에서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징벌 요건인 규율위반 행위를 규칙에 특정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다. 이는 징벌 법정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행형당국의 자의적 조치를 배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참고로, 영국 행형법의 경우, 징벌의 요건인 규율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벌 부과 기준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행형법도 징벌요건을 이 법에 의하여 또는 이 법 상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고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규율의 내용을 살펴보면, 징벌은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최저기준규칙 제27조에서도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1955. 8. 30.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 1957. 7. 31.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피구금자의 권리장전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3)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국제연합 총회에서 1988. 12. 9. 투표없이 채택

그러나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은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교도소 등의 안전과 내부 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징벌 남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실내에서 취침 시간 외에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된다, 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벽 등에 부착해서는 아니된다. 등의 조항은 교도소의 안전, 질서와는 무관한 수용자 통제를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자살, 자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용자의 경우 미래에 대한 절망감, 건달징역, 왕따, 성추행 등 교도소 내의 부당한 환경, 가족·친구 등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사회에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이 자해 또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징벌을 통한 자해 또는 자살의 충동 억제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교도관 또는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징벌 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삭제 전까지 그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칙 제3조 제12호에서 도박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화투 등 물품을 제작·수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용자나 교도관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규율이 수용질서 유지의 기능뿐 아니라, 수용자를 수용질서와 무관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⁴⁾.

(4) 따라서, 징벌요건인 규율위반행위를 행형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하위 법규로의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그 범위와 한계를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여야

4) 위 규칙에서 규정한 규율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정당한 이유 유무를 전적으로 교도소측이 판단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판단의 재량권으로 수용질서와 무관하게 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수용질서에 부합되는 것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라. 징벌에 대하여

(1) 조사절차의 엄격성 및 투명성

(가) 징벌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겨쳐 소장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우선 징벌 조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행형법에서는 규율위반으로 조사 받게 되는 수용자에 대해 처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징벌규칙 제7조 제1항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 조사 받는 수용자에게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소장은 규율위반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 수용자를 금치집행 중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

그러나 징벌 조사중에 있는 자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금치집행 중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징벌규칙 제7조 제2항 중 조사실 수용자의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의 사용 등을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제한하거나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교도소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고,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에만 중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단, 접견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 변호인 접견은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미결수의 변호인 이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징벌도 불이익한 처분이고, 법률상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위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 받고 있다. 따라서 위 규칙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조사 받는 수용자의 권리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물론, 위 규칙 제7조 제2항이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접견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징벌 의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1999년 12월 개정 행형법에서는, 수용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징벌의결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⁵⁾, 위원의 임명권이 징벌위원회 위원장인 소장에게 있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징벌위원회에 지역 인권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규율위반 사안별로 징벌권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영국은 3일 이내의 금치 처분만 교도소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법관이 참여하는 Board of Visitors(방문자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하고 있고⁶⁾, 독일에서는 징벌권이 시설의 장에게 있으나 수형자의 징벌사유가 해당시설의 장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감독기관이 징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⁷⁾.

그리고 징벌은 수용자에게 과해지는 처우상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수용자는 자신의 징벌 혐의내용에 대해 고지 받고 규율위반의 조사과정이나 징벌위원회의 의결절차에서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30조 제2항에서도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 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5) 행형법 제47조 제2항 : 징벌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참고로, 2000년 국정감사 결과 2001. 8. 현재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징벌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민간위원이 1명으로 나와 있음.

6) 김진, 구금시설 실태 조사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105쪽

7) 장규원,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120쪽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행형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징벌규칙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줄 것(제7조 제1항 제2호)과 징벌혐의자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징벌혐의 내용을 심문하고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4항).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기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이다. 징벌의 결절차에서 변호인이나 대리인,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행형법시행령에서 징벌의 선고를 소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수용자에게 선고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징벌 절차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불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장은 징벌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정확히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징벌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가) 자유형 및 그 외 범죄로 인해 외부와 격리시키는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징벌의 경우에도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 집행 내용 그 이상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금치 집행의 현실을 보면, 징벌실의 구조가 평균 신장을 가진 장정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공간이고, 교도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창문을 좁히고 창문마저 아크릴판으로 가리고 환기구멍만 몇 개 뚫어 놓아, 징벌실 자체가 금치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최저기준규칙 제31조는 체벌, 암살 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인간적인 징벌실에서의 금치 집행은 위 최저기준규칙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금치 처분의 경우, 징벌실(독거실)에 수용하는 것 이외에,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결국 금치처분은 다른 징벌을 함께 병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특히 위 시행령에 의해 금치된 자에게 행해지는 서신·접견금지와 작업금지·운동정지는 인도적 처우와 교육형의 이념에 맞도록 징벌의 종류를 대폭 정비한다는 취지⁸⁾에서 1995. 1. 5. 행형법 개정시 삭제된 징벌의 내용인데 이런 반인도적 처우를 시행령에서 사실상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24시간 좁은 실내에서 운동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정좌세로 앉아 있게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가혹한 형벌이며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독일 행형법의 경우 4주 이내의 구류 처분시 작업, 신문 잡지 구독, 라디오, 텔레비전, 자유시간 향유를 위한 물건 소유 및 장식, 복장, 구입, 강의 등에 관한 수용자의 권한은 정지되나,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등의 외부와의 교통권은 차단되지 아니하며(다만, 긴급시 교도소 외부인과의 3개월 교통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징벌이 있다), 집필이나 운동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104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⁹⁾

(3) 그리고 금치처분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중 하나가 연속징벌이다. 좁은 방에 혼자 들어가 앉아 금치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의 규율위반행위란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그 외에 안전질서를 해할 행위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과도한 금치 집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인간적인 금치집행의 개선없이 모든 책임을 수용자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속징벌은 집행의 기간을 법률로써 제한한 행형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징벌은 연속해서 집행할 수 없고, 징벌집행을 완료한 후 다음 징벌까지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http://www.moleg.go.kr/>

9) 장규원,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120면

(4) 마지막으로 징벌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징벌결정에 대해 수용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징벌 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금치 집행 중 접견, 서신, 집필이 금지되어 있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접견, 서신, 집필 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불복절차로는 신속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벌집행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보호원칙 제30조 제2항에서도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는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항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 불복제도에 대하여

가. 서문

교도소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회복할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법규상 청원과 소장 면담이 있고, 그 외 일반 소송(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고소 및 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그리고 기타 일반 기관에 대한 진정 등이 있다.

요즘 교도소측도 수용자들의 불복기회를 많이 인정하고 있어 이전과는 달리 불복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용자의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불복제도의 실태와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나. 청원

(1) 행정법 제6조에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개정 전에는 청원서 집필신청을 할 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가 폐지되어 청원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게 되었다.

수용자들 대부분이 법률 문외한이고,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력이 낮은 자들이 많아 일반 민사, 행정소송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입소시 고지받는 청원을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아는 수용자들이 많다. 그 만큼 청원은 수용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청원은 법무부 내에서 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므로, 수용자의 처우와 인권을 위하여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행정법에 청원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집필허가 문제로 청원권 자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청원서 작성도 집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원서 작성 역시 집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용자청원 처리지침 제5조에는 수용자가 청원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교도관은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장은 당해 수용자에게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자로부터 청원서 집필신청을 받은 담당교도관은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 청원서 집필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소장도 즉시 집필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담당교도관이 소장에게 집필 신청 자체를 보호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소장이 집필허가를 하지 않아 청원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3) 그리고 수용자들이 구금되어 있고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원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등이 수용자로부터 청원을 받으면 상당기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청원 결과를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던 수용자들이, 청원 결과가 늦게 도착함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로 권

리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권리구제 가능한 경우 그 방법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그리고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사항을 접수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조사관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 교도관에 대한 조사에만 그치거나 이미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시설의 교체 이후의 상황만 조사하여 실효성 있게 수용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수용자의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01년 7월까지의 청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계	가석방·감형 등 요망	의료조치·이 송 등 요망	부당처우 개선요망	기타
계	653	42	220	201	190
처우반영	55	4	27	11	13
기각·각하	464	34	155	149	126
취하	78	2	21	28	27
심사중	56	2	17	13	24

(출처 - 2001년 국정감사자료)

(5) 청원은 수용자가 구금시설을 관장하는 법무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유일한 불복제도이다. 따라서 법무부로서는 청원을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이행하며, 제도개선까지 요구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처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장과의 면담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과 면담할 수 있다(행형법시 행령 제9조¹⁰⁾). 소장 면담은 처우에 대한 불복 이외에 일신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원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정공무원의 위법, 부

당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면담신청을 하여도 소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거나 소장에게 보고되더라도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묵살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은 면담신청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시간적 한계로 신속한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업무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일반 소송의 문제

(1) 오늘날 수용자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에게 재판청구권이 있고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교도소측은 수용자들의 소송 제기 행위를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집필과 관련하여

소제기를 위해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행형법에 의하여 소장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도소 등의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 개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필불허 사유 중 교정직원이나 태재소자 등을 모욕하거나 음해하려는 내용,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소내 생활의 내용 등을 청원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려는 내용, 교정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이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간섭 또는 왜곡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되거나, 집필 문서가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교도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 청원, 국가배상을 구하고자 할 경우 교도소측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 후, 교정직원 음해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10) 행형법 제46조 제2항에서 2월 이내의 금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¹¹⁾함으로써, 재소자집필제도운영개선의 효력을 부인하였고,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수용자의 집필권 및 집필문서 발송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수용질서나 교정 두 가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소송진행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발송하는 것이 수용질서나 교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진행을 위하여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집필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재판 관련 서류는 검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특히 교도측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을 위한 문서는 검열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위와 같은 내용이 행형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최저기준규칙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변호사의 조력과 관련하여

수용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에는 서신교환과 접견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서신교환관 관련하여 검열없는 서신교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미결수용자의 경우 변호사와 접견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없으나, 수

11) 행형법 시행령 제9조(소장과의 면담)
① 수용자는 처우 및 일상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자의 경우에는 접견횟수(월 4회)·접견 시간(30분 내) 등을 제한하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하여 요지를 기록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가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징벌 조사 중 또는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일반 면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접견이 수용자의 재판준비를 위하여 필수 요건이고, 미결수에 대한 무제한의 접견권이 형사사건의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민사·행정·헌법소송을 위해서도 역시 무제한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수형자의 접견 보장은 반드시 행형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물론,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법하에서도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금치 집행 중에 있더라도 접견(서신포함)을 허가할 수 있고, 일반 접견 역시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취지하에 횟수나 시간 제한 없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 기타

권리구제절차는 그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행형제도 및 정책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 신청 행위를 문제수로 확정하기 위한 징표가 아니라 기본권의 실현 및 행형 제도개선을 위한 몸짓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용자의 불복절차는 교도관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업무 증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4개의 교정청에 공익법무관을 두어 수용자들의 간단한 법률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자유형은 외부와의 격리를 통해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태를 살펴보면, 그 이상의 고통이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징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국가권력에 24시간 직접 노출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교정당국은 절제력 있는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교정과 징벌을 혼동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권리구제수단은 수용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교도소의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는 어떠한 이유로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矯正公務員의 地位保障 및 勤務環境 改善을 위한 制度的 方案

京畿大學校 矯正學科
許柱旭 教授
(韓國矯正學會 常任顧問)

- 목 차 -

1. 서 론

2. 교정공무원의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 가. 국가 형별권의 3대축 중 유일하게 교정국만 독립되지 않고 있다.
- 나. 교정조직의 개혁

- (1) '교정청(가칭)'의 독립 신설
- (2) '교정연수원(가칭)'의 독립 신설
- (3) '교정공무원법(가칭)'의 제정
- (4) '한국 교도작업공사(가칭)'의 독립 신설
- (5) 기타 조직의 개혁
 - (가) 보호국 업무의 통합
 - (나) 법률 및 홍보 전담부서의 신설
 - (다) 정복직원과 사복직원간의 갈등 해소
- (6) 교정행정 개혁추진기구의 설치

3.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 가. 사기진작책의 즉시 시행
- 나. 업무 폭주에 따른 대폭적인 증원
- 다.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 라. 전문 교정시설의 신설

4. 맷음말

5. 별첨자료 (① ~ ⑥)

1. 序 論

가. 矯正公務員의 意義 및 任務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집행의 주체로서 국가형벌권의 집행 수임(격리구금기능)과 범죄인을 교화 개선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교화복귀기능) 교정인이어야 하는 양대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국가공무원이다.

전자는 형벌권의 집행자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회오, 반성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계호와 위반자에 대한 징벌 등을 수행하여야하고 후자는 교정의 집행자로서 각종 교화프로그램의 운용,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시행, 일그러진 인성에 대한 순화, 개선 등을 수행하여야 할 이중적 임무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양면성 공직자’인 교도관들은 ‘단면성 공직자’인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자세와 언행 및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쟁하는 것 같은 심정이고 그에 상응한 전문직공무의 수행이나 특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정립이 요구되기도 하여 심신이 매우 고달픈 공무원들이다.

나. 刑事司法機關의 3대 축으로서의 矯正

범죄자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과 그에 대한 최종확정 판결을 하는 법원은 사건 종결이 단기간내 종료되지만 (경찰은 구속후 10일, 검찰은 구속후 20일, 법원은 구속후 1심 6개월, 2·3심 4개월 등 총 14개월 기준임), 국가형벌권의 최종 보루인 교정은 미결수용업무 이외에 유기와 무기 및 확정사형수에 이르기까지 범죄인들에게 형벌권과 교정권을 평생동안 한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인이 속하였던 가정의 부모, 형제, 자식, 친지들이나 사회에서도 교화개선시키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교정인들은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 공무집행이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인지하고 그들이 즐겁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위도 보장하여주고 근무환경도 개선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형벌권과 교정권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다

2. 矯正公務員의 地位保障을 위한 制度的 方案

가. 國家刑罰權의 3대축 중 유일하게 矯政局만 독립이 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법원은 법원조직법, 검찰은 검찰청법,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등으로 독립되어 인사, 예산, 업무 집행 등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우수공무원의 확보, 공무집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정직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에 걸맞는 전반적인 조직의 개혁과 확고하게 지위를 보장하여야 할 개혁의 당위성을 발견하게된다. 이제는 제의가 아니라 즉시 착수하여야 할 단계임을 제기하며 이로써 교정직공무원의 지위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矯正組織의 改革

(1) '矯正廳(假稱)'의 獨立新設 (별첨 1, 2, 3 참조)

(가) 우리나라 16개 외청들의 공무원 정원과 예산을 교정국과 비교하여 보면,

1) 정원면에서는 교정국이 12,410명으로 1위인 경찰청에 이어 4위이고,

2) 예산면에서는 교정국이 5,514억 원으로 1위인 철도청에 이어 5위이다.

(나) 이를 경찰청과 비교하여 보면,

1) 정원면에서는 경찰청이 96,102명으로 교정국의 12,410명과 대비하여 7.7배이고

2) 예산면에서는 경찰청이 3조4,800억 원으로 교정국의 4,701억원 대비 7.4배이다.

(다) 교정직 5·6급 직원들이 생각하는 '교정청'독립에 대한 설문내용을 보아도 후술하는바와 같이 83.9%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 대학내 개설학과의 실태를 비교하여 보면,

1) 학과수면에서는 경찰행정학과가 54개교로, 경기대 1개교 대비 54배

이고,

2) 학생정원면에서는 경찰행정학과가 8,640명 정도로 경기대 교정학과의 280명 대비 31배이며

3) 대학교수면에서는 경찰행정학과가 295명 정도로서 경기대 8명 대비 3배로 추정된다.

(마) 이와 같이 교정국을 16개 외청이나 경찰청과 대비컨데 방대한 7조직이 법무부의 1개 내국에 불과함은 조직의 규모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 따라서, 시급히 현재의 1개 내국 단위에서 독립청인 '교정청(가칭)'을 독립 신설하여 경찰청과 동등하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경찰의 경우 일찍부터 내무부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1974. 12. 24),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1991. 8. 1) 되었으며, 내무부 민방위국도 민방위본부로 승격(1975.9.22)되었음은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민방위 본부나, 출입국 관리국도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예도 영국에서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교정본부장을, 호주에서는 주·정부별 교정장관을 두고 있다.

(사) 矯正廳(가칭)의 조직 편성 방안을 예시하여 본다.

1) 교정청장 산하에 차장 3명을 두되,

가) 제1차장은 교정업무(시설내 처우)를 관장하고

나) '한국교도작업 공사(가칭)'에도 차장 1명으로 보임하고

다) '교정연수원(가칭)'의 원장도 차장 1명을 보임하는 것이 좋겠다.

2) 하부조직으로 4개 지방청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대로

가) 교정국만해도 4개 지방청이외에 45개 교정기관과 12,410명의 교도관 및 58,741명의 재소자, 경비교도대 4,500여명이 있으며

나) 교정국의 방대한 업무를 오히려 4개 지방청 별로 확대 개편하여 교정기능을 활성적으로 운영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2) '矯正研修院(假稱)'의 獨立新設

(가) 현재 교정공무원의 연수교육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 실시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교육은 법무부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직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전문교육이 미흡한 상태이다.

(나) 해방전 일제치하때 (1918. 5.)에도 '간수교습소'가 있었고 해방후 미군정청때 '조선형무관 학교'가 있었으며 해방 후에도 '교도관학교'로 있다가 1972년 11월 폐지되어 법무연수원에 흡수되었다.

(다) 교정직 공무원들은 그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24시간의 주야간 근무에 따른 교육의 특수성으로 이론 외에 제식훈련, 총기훈련, 계구훈련, 폭동진압 훈련, 시설방호훈련, 소방훈련 기타 각종 무술훈련 등 다른 법무부 공무원에게는 실시되지 않는 특수한 훈련들이 더 비중있게 행하여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규율의 부서'라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관계로 엄정한 규율에 근저를 둔 정복직원으로서의 예절 교육 등 일반 사복착용 법무부 공무원과는 특이한 교육방법으로 인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라) 경찰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일반공무원의 연수기관인 내무부 지방 행정 연수원이나 각 시·도 공무원 교육원과는 달리 일찍부터 경찰종합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있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경찰대학교 마저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방 공무원의 경우도 소방학교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교도관 연수소는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법무성에 일반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과는 독립하여 교정공무원의 전문 독립 연수기관인 '교정연수소'가 있고 전국 8개의 교정관구 산하에 8개의 '교정연수소 지소'가 독립 설치되어 있다.

(마) 따라서 '교정청(가칭)'이 독립되면 당연히 '교정연수원'(가칭) 도 독립되어야 한다.

편제를 보면, 연수원 임무의 중요성과 위상을 감안하여 원장은 본청 차장급과 동등하게 설치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3) '矯正公務員法(假稱)'의 制定

(가) 교정국이 같은 형사사법기관 중 상대적으로 이토록 위축되어 있고, 학교나 학생 및 교직자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교정학의 발전도 부진하여 아직도 그늘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컨대 경찰청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우대를 받는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이 있지만, 교정국의 경우는 '일반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도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나) 모든 공무원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동 보수법, 동 징계령, 동 임용령, 동 전형령 등에 의거하여 관리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1969년 1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공무원'이라는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독립된 신분이 인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교정직 공무원은 아직도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사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교정직 사회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자기비하적인 의식구조와 직장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별첨 6, 교정직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관한 연구(2002.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행 참조)

따라서 형벌권 집행의 최종보루요 최후단계인 교정 기능의 회생과 재건을 시급히 촉진하여야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 등 3대 축인 형사사법기관간 관련업무의 기획, 집행, 평가면에서 균형된 발전을 이루하여 각자가 독자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라) 아울러 인사관리면(급여, 복리후생, 수당, 정년, 연수 등)에서의 비교적 열위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더욱이 인사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급 이상에 대한 계급정년제 도입, 공무원 노조설립의 금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교정과 경찰과의 실태대비 결과 매우 충격적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형사사법기관인 검찰이나 법원과 비교하여 보면 이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인사관련 제도 등에서 경찰과 대비컨대 교정과의 격차가 심

하여 도저히 균형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여러 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아무리 격무에 시달려도 인사관리면에서 상대적 우대를 받으면 견디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마) 또한, 교도관들은 격무, 범죄인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국민들의 질시와 부정적 인식, 오지근무에서 오는 가정의 안정저해 등으로 자기비하적 의식이 66.4%에 달한다는 조사(첨부자료 참조)도 있으며, 행정고시출신 교정관의 이직률이 타 부처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현실에 대하여 정부 당국자는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숙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경찰직과 동등한 내용의 '교정공무원법(가칭)'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4) '韓國矯導作業公社(假稱)'의 獨立新設

(가) 公社獨立의 必要性

교정국내의 '작업지도과'를 '한국 교도작업공사(假稱)'로 확대 개편하되公社의 長은 '교정청(가칭)'의 제 1차장과 '교정연수원(가칭)'의 원장처럼 차장급으로 보임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공사의 운영체제는 미국의 '미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와 싱가포르의 '갱생사업공사(SCORE)' 및 일본의 '교도작업협력사업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철저히 민간기업의 최신 경영조직과 기법을 도입하여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어느 민간기업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도록 개혁하여야 한다

(나) 一般矯導作業의 改編

1) 현황

가) 전국 교도소 등에 336개 공장을 설치하여 목공, 인쇄공 등 29개 직종에 1일 평균 25,138여명 상당이 작업을 하고 있다.

나) 교도작업특별회계법(1961)과 교도작업관용법(1962)에 의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에서는 교도소내 작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도록 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 그러나, 현실은 중요한 관용품 중 군대,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의 각종 지급품 (군복, 경찰복, 교도관복, 소방관복, 내의, 군화 등)과 책상,

걸상 등 대부분이 관용품으로부터 빼앗겨 교도소내 작업장이 많이 비어있고, 유휴시설 상태로 방치된 것이 적지 않은 듯하다.

라) 더욱이 교도작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이나 기술수준이 사회의 최첨단 시설이나 기술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하며, 배운 기술과 작업임금(또는 작업상여금)이 출소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도작업이 수령자의 직업, 소질, 의견, 교육수준, 능력, 적성 등과 일치되어 생산적이고 유용한 것이어야 하나, 현재의 교도작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단순작업 중심의 기초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과거에는 교도작업에 의한 '민업압박이 문제'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민업작업에 의한 '관업압박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개편

가) 정부는 민간기업에 빼앗긴 교도작업 관용품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범위와 품목 등을 확정, 조달청으로부터 다시 환수하여 이를 휴업상태의 교도소내로 옮겨 교도소내 작업장들이 활기있게 가동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도 많은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나)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경제 5단체 및 30대 재벌기업군과 협의하여 재벌들이 참여하는 교도소 작업체계를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① 30대 재벌들이 운영하는 '스포츠 분야(축구, 야구, 배구, 농구)'와 '문화분야(예술, 문화, 학술, 장학사업 등)' 이외에 '교정 분야'에도 전폭적으로 동참할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② 왜냐하면, 기업PR 측면에서 재벌들이 스포츠 분야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아도 축구와 야구 등에 년간 약 170억원(130억~22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이나 학술재단 등에 출연하는 예산은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③ 또한 기업의 경영이념 측면에서 보자. 기업들의 경영이념이 이윤창출 이외에 국가사회에 기여한다든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면, 교정시설의 현대화 또는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에 출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보람 있는 참여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④ 따라서, 정부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참여내용을 제시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첫째, 도심 내에 산재해 있는 교정시설 [안양, 영동포(교), 영동포(구), 춘천, 광주, 부산(구), 부산(교), 장흥 등]을 기업들에게 공개 입찰로 매각한다.

둘째, 신설하여야 할 교정시설을 신축하도록 연계시켜 (토지는 값싼 국유재산으로 제공조건) 완공되었을 때 양자간에 상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불하고, 남으면 교도작업 특별회계로 환입시키면 된다. 실제로, 수원교도소 매각(22,000평 상당)과 여주교도소 신축(52,000평 상당)으로 약 1,000여억 원 상계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완성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셋째, 참여한 기업들은 이때에

ⓐ 신축교도소 시설 내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하청을 주어 최신 기계와 기술은 제공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인수하는 경우, 관사작업제품 생산용 최신시설과 기계 및 기술을 제공한 후 임가공비만 수령하고 생산제품을 주문자에게 납품도록 하는 경우 및 교도소별 직업훈련(파견)만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들이 요구하면 교도소내 작업장에 자기회사 Logo나 Brand를 기업별로(예 : 삼성관, LG관 등) 사용하게 하여 대내외적으로 PR을 할 수 있게 하자.

ⓓ 정부는 참여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나 세제상의 혜택을 특별히 배려하여 참여에 따른 기업 PR이나 Image 향상 및 경영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충분한 투자 매력을 주어야 한다.

ⓔ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내용을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해 주고 매년 1~2회 정도 정기 경진대회를 시행하여 실적평가와 충분한 시상 및 혜택을 주어야 한다. 기업들이 국익차원에서 동참하더라도 유형, 무형의 혜택이 없으면 미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정분야 참여가 스포츠나 문화분야 참여 못지 않게 실익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에서 편의상 30대 재벌로 제한하였으나, 그 이외의 기업들도 교도작업에의 동참의사가 있으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동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 기업들의 교도작업 참여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10년 후에는 정부에 기부 체납하거나 정산을 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 職業訓練의 改編

1) 현황

수형자들이 출소 후 취업을 하는 것은 재범방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교정기관에서는 수형자들이 수형기간 동안 제대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직업훈련 종목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우수한 직업훈련교사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교정기관에서 모든 수형자에게 '1인 1기의 직업훈련'을 목표로 하고, 특히 취업에 용이한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근 3D 업종 분야에서의 인력부족으로 30만명 이상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산업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수용자들에 대한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전면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2) 개편

가) 職業訓練 專擔矯導所의 設置

① 교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지구 약 20,000평 부지에 전문직업교도소의 신설을 참으로 환영한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확정된 직업훈련품목을 가능하면 전부 교육할 수 있는 '종합 직업전담 교도소'를 설치하여 내부에 직종별 분공장을 아파트형으로 편의에 따라 수십 개로 분할하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시설도 겸하여 부설하였으면 좋겠다. 즉, 직장에 출·퇴근하듯이 사방내에서 침식을 하고 바로 앞의 직업훈련장으로 이동하여 기술을 배우면 될 것이다.

시화지구 1곳으로 부족하면 의정부에 있는 약 20만평 중 일부라던가 각 지방청 산하마다 산재하여 있는 부동산을 분산해서 4개청 별로 설치하였으면 좋겠다.

② 職業訓練 專擔矯導所에 企業의 參與

첫째, 기업들의 직업훈련 전담교도소에의 참여는 앞에서 제의한 일반 교도작업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다. 일반 교도작업에 참여한 기업이든 아니면 직업훈련만 전담코자 하는 기업이든 각 회사의 편의에 따르면 된다.

둘째, 다만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제도의 운영 취지가 출소 후 수형자가 자립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 이어야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반드시 최첨단 기계류와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직업훈련교사도 기업체 책임하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

셋째, 본 직업훈련계획에 대한 기업의 지원기간도 앞의 일반 교도작업과 같이 10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나) 職業訓練 職種의 範圍와 品目 決定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계, 전자, 전기 등 13개 분야의 63개 직종의 종합 재검토

② 영국의 교도작업센터(Prison Enterprise)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직종의 범위와 품목 검토 (별표5 참조)

③ 종합적으로 참여 기업체들과 재검토하여 수형자 1인 1기 직업 훈련과 출소후 자영업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품목을 최종 결정

다) 교정시설내에서 직업훈련을 전임으로 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사' 가 90명에 불과한바 이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며, 이의 보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참여 기업체에서 하면 좋겠다..

(라) 訓練者들의 立場

일반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수형자들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형자 모두에게는 입소즉시 일반교도작업이 부과된다. 장·단기 수형자를 불문하고 교도작업을 하되 작업성적이 양호하고 누진계급이 상위에 오를 때 심사결과에 따라 직업훈련을 부과하면 된다.

2) 전체 수형자 58,741명중 미결수용자 약 20,363명을 제외한 수형자 38,378명의 약 20%정도인 7,600명을 직업훈련 심사대상자로 하여 1차로 약 5~6,000명을 집중훈련 시킬 것으로 예상하자.

3) 확정된 직업훈련 대상자는 자기가 출소후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직종 1~2개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심사후 훈련을 받게되고 본인들은 출소후 그 기술로 자영업을 하면 될 것이다.

(마) 徹底한 企業經營 体制 導入

1) 이상 일반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에 독립적인 기업경영 체제의 도입을 제의하였다. 이는 당연히 독립채산제의 사업부체 형태이어야 하고 민간기업과 경쟁하여도 손색없는 기업체가 되어야 한다.

2)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 생산, 관리 체제는 물론이고 종업원도 대부분 교도관들로 구성된 것을 탈피하고 전문적인 인력(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화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 전공자)으로 충원하여 명실상부한 기업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도작업에 의한 민업압박을 탈피하여 빚었던 작업들을 회수하고 재소자중 90% 이상이 징역형 수형자인 점을 감안하여 교정시설내 작업공장의 가동률이 100% 회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其他 組織의 改革

(가) 保護局 업무의 統合

이상 편의상 '시설내 처우로서의 교정국 업무'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1단계로 제시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국 업무'도 제2단계로 통합하여야만 명실상부한 '교정·보호업무의 일원화'가 될 것을 정책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교정청장 산하에 제1차장(시설내처우 업무)과 제2차장(사회내처우 업무)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면 될 것이다.

(나) 法律 및 弘報專擔 부서의 新設

1) 法律專擔部署의 新設

오늘날의 교정업무는 UN을 비롯한 국제적인 기구 및 학회 등과의 밀접한 교류가 증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원, 소송제기, 진정 등의 폭주로 법률적 해석과 판단 및 대처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법률담당 전담 부서가 교정국내에 절대로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 각 국 및 일본에서도 교정국내에 별도 법률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정국 관련 법률문제를 송무과, 인권과 등 법무부내 타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정국내에 '법률담당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사법시험 합격자나 공익법무관 등으로 보직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2) 弘報專擔部署의 新設

가) 소극적인 矯正弘報

교정행정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할 경우 이외에는 매우 신중하고도 소극적으로 홍보하여 왔다고 본다. 각종 국내외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정행정 분야의 노력과 지속적인 발전은 정말로 괄목할 만큼 진전되어 왔다고 자부한다.(본인이 1962년도에 처음으로 '행형학' 책을 저술할 당시, 서울 서대문에 있던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을 때와 현재 교정 시설을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이 있음)

그러나 유관 형사사법기관의 상대적인 우위로 인한 교정행정 비하현상과 국민 대다수의 전 근대적인 차별인식 및 백안시로 교정분야에 봉직하는 우리 교정직원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그늘에서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끔 신문·TV 등 언론에 나타나는 보도도 부정물품 수수, 수용자에 대한 폭행 등 교도관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도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타직종에 비하여 매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덧붙여, 아직도 감옥·간수라고 부르는 신문, TV 매체가 많으며, 교도소를 범죄 학교 혹은 범죄의 온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나) 적극적인 矯正弘報

따라서, 정부당국은 교정행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 책정에서부터 그간 추진하여온 교정의 발전내용과 향후 예정되어 있는 계획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이 응분의 평가도 받고, 사기도 진작되며, 국민들이나 범죄인에게 희망도 주는 적극적인 홍보확대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교정행정 홍보전담 부서'의 신설을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

다) 矯正事故의 一罰百戒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교정직공무원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성실히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자행하고 있음을 개탄할 일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별백계로 준엄하게 척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 正服職員과 私服職員間의 葛藤解消

1) 사복직이라 함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류직, 교회직, 기능직, 의무직, 직업훈련교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현재 총 1,326명에 달하고 있다.(정복직원의 수는 11,084명)

그런데 교정시설내에서 정복직과 분류(심사)직, 교회직 등 사복직원과의 갈등이 있어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갈등의 주요 이유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2000. 2. 28 개정)에 의거, 첫째, 서울구치소등 12개소의장을 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타 소장은 교정감으로만 보하도록 규정하여 교회직과 분류직 교정공무원은 과장(4-5급) 이후 승진기회가 없으며, 둘째, 교회직류는 40개 각 교정시설마다 교무과가 있어 과장의 자리가 있지만, 분류직은 40개 교정시설 중 19개소만 과장보직이 가능하여 나머지 21개소는 분류직 5급이라 하더라도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3)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류직과 교회직 등 간부에게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고, 둘째, 분류직의 경우에는 21개 교정시설에 분류심사과를 신설하여 무보직 간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 矯正行政 改革推進機構의 設置

이상과 같이 교정업무의 대폭적인 개혁을 위하여 '참여 정부'에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 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韓國 矯正行政 改革團(가칭)'을 설치하고,
- ② '한국 교정개혁 10개년 계획'을 수립, 교정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세계적 교정 모범국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3. 矯正公務員의 勤務環境 改善을 위한 制度的 方案

가. 土氣振作策의 즉시 시행

(1) 교정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파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행한(2002.12)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우리 교정계가 안고 있는 각종 과제를 적나라하게 분석하였다.(별첨6 참조)

(2) 사기진작책을 수립하여야 할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만 34개 항목으로 매우 광범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즉, 인사관리, 대우, 위험도, 복지와 근무여건, 태도, 협박, 폭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특히, '기회가 있을 때 전직의사가 있다'는 교정공무원이 66.4%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단위조직내에서 '물적개혁' 보다 '인적개혁'이 더 중요함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즉시 치밀하게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업무폭주에 따른 대폭적인 증원필요

(1) 현황

(가) 교정시설의 신·개축에 따른 교정인력 수요 증가

(나) 새로운 처우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다) 전화통화 허용, 서신횟수 제한 철폐, 접견횟수 증가, 「부부만남의 집 설치·운영」, TV 시청확대, 전수형자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등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강화와 처우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른 교정인력 수요의 증가 (전화통화, 서신 및 접견 등의 업무시 수용자간 통보·도주·부정물품 반입 등의 방지를 위한 인력 필요)

(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 등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크게 강조되면서 각종 권리 구제 [소장면담, 청원(장관), 진정(인권위), 소송, 헌법소원, 기타 진정(청와대,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처리를 위한 교정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

(2) 교정공무원 관련 각 국의 비율

(가) 우리나라의 교도관 1명당 수용자와의 비율은 교도관 인원 12,410명 대비 재소자 58,741명(2003. 5. 8. 현재)으로 4.7 명이다.

(나)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중 주요 국가들을 비교하면(별표 4 참조), 한국보다 많은 국가는 태국(20.4명), 싱가포르(6.7명), 중국(5.0명), 캄보디아(4.9명) 등 4개국뿐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보다 적다. 즉, 미국(3.9명), 일본(3.3명), 프랑스(2.0명), 독일(2.0명), 홍콩(1.8명), 캐나다(1.6명), 영국 (1.3명), 스웨덴 (1.0명) 등이다.

(3) 따라서, 적어도 일본 수준인 1명 대비 3.3명으로 하려면 총 17,580명이 필요하며, 약 5,200명의 교정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단계적인 증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 유능한 인재의 양성

교정의 성패도 결국 유능한 인재의 확보 결과에 따라서 좌우됨은 당연하다.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채용 조건의 대폭적인 개선, 직장으로서의 보람됨, 비전 제시에 대한 취업자들의 공감대 형성, 취업후 전문성과 특화성의 교육,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등에 따라 성사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 矯正施設의 現代化 및 擴充

(1) 矯正施設의 現代化

교정시설 중에는 아직도 건축한 지 30여 년이 지난 노후시설들이 많고 (약 70% 이상), 전국 경찰서에 산재하고 있는 14개 대용교도소를 구치시설로 대체하여야 할 과제 및 2004년까지 신·개축할 청주여자 교도소, 통영, 충주 구치소등의 교정시설 등을 현대적이고 기계화된 쾌적스러운 시설로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1세기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교정직원

650명 중 ‘교정시설의 현대화’(30.7%) 및 ‘교정시설의 확충’(15.3%) 등 46%에 달하는 직원이 이를 당면 과제로 지적하였다.

(2) 科學的 保安裝備의 設置

기존의 교정시설은 보안직원에 의한 ‘인력중심의 계호체계’를 하여왔지만, 앞으로는 최첨단 교정기기인 CCTV, 자동식 개폐문장치, 전자카드, 각종 전자감시 시설 등 최신기계장비로 최대한 대체하여 과학적인 ‘기계중심의 계호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보안시설 내지 장비의 설치로 혐오스러운 망루나 구시대적인 계호장비 등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단계적 대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보안직원이 전체 교정직원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각종 계호장비의 현대화로 많은 유휴인력을 분류심사직, 교회직, 교도작업직 등에 순환전보 처리하여 교정인력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拘置施設의 増設

(가) 무엇보다도 교정시설 중 그 증설이 시급한 것은 구치소(구치지소 포함)인바, 현재 전국에 구치시설이 12개이므로 전체 교정시설 중 25.6%에 불과하다. 또한 구치소는 법원·검찰 주변에 구치지소의 형태로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로 현재 일본의 1일 평균수용인원은 6만여 명 수준인데 교정시설은 총 191개소이고, 이 중 구치시설이 115개소이며 그 가운데 108개가 구치지소이다. 형사소송 진행중에 있는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리이므로 교도소의 수형자와는 달리 처우할 수 있는 구치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나) 또한, 구치시설은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검찰청 인근 도심지에 위치하여야 하고, 외관상으로도 일반 사회건물과 동일하게 수용규모에 걸 맞는 아담한 건물 내지는 고층빌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선진국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 앞으로 미결수용자를 과다수용하고 있는 교도소로부터 연차적으로

구치지소를 별도로 독립설치하여 형사소송수행 등 미결수용 업무의 전문화 내지 원활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專門 矯正施設의 新設

(1) 專門 醫療矯導所의 新設

(가) 교정국 통계에 의하면, 2001년 기준 일일평균 교정시설내 치료수용자 수는 약 1,000여명이고, 외부병원 이송치료를 받은 수용자는 연간 총 9,4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교도관(5·6급)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2002. 12), 94.8%가 의료 교도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피수용자들은 거의 모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환자에 속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 등 구미 선진국은 물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전국에 의료교도소가 4개소에 이르며, 의료중점 처우 교도소도 6개소나 운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변변한 전문의료교도소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루 빨리 4개 지방청별로 의료교도소를 신설하여 환자수용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처우의 행정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외부병원 이송에 따른 계호부담과 의료비용을 줄이고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편, 의료교도소는 질병의 종류와 특수성에 따라서, 일반의료 교도소, 마약사범 교도소, 정신병사범 교도소, 결핵사범 교도소 및 신체장애자 교도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의료교도소 이외에 職業訓練專擔 矯導所, 老人矯導所, 外國人矯導所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民營矯導所의 정착도 같은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맷음말

가. 오늘 '참여정부'의 새 법무부가 교정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주최한 워크숍에서 본 논제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몇 마디를 남기고 싶다.

나. 오늘 한국교정 사상 유례없는 '교정공무원 워크숍'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 사항들이 일과성 행사가 되지 않고 최대한의 결실이 있기를 꼭 기대한다. 우리는 광복이후의 눈부신 교정 발전을 반석삼아 이제 한발 더 움비할 교정개혁을 시험대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 개혁은 '물적 개혁'과 '인적 개혁'의 두 굴레를 균형있게 추진하되 인적 개혁인 교정인들의 사기진작에 우선을 두고 그 후에 물적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자. 너무나 엄청난 개혁과제이기에 허황된 것도 있겠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개혁과제는 오랜 세월동안 제기되었던 과제들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이제 착실히 추진할 일만 남았다고 본다.

라. '국민의 정부'에서 불을 붙인 '교정인의 교정국장 보임'에 이어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교정청(가칭)'등 관련 기관의 독립 신설과 '교정 공무원법(가칭)'의 제정 및 '교도작업 공사(가칭)'등의 발족을 서두르자. 이를 위한 '교정개혁 기획단(가칭)'도 조속히 설치하자.

끝으로, 논의에서 벗어나 실천만 남아있는 우리나라 '교정개혁'의 성공적인 도정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찬 첫발을 내딛자.

5. 別添資料

가. 외청별 공무원 정원과 예산현황(교정국)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공무원 정원		예 산 액		비 고
	1997	2001*	1997	2000**	
경 찰 청	97,349	① 96,102	3,263,860,678	② 3,480,949,413	
철 도 청	36,389	② 29,418	3,435,943,234	① 4,359,598,000	
국 세 청	17,491	③ 16,845	582,151,026	④ 691,228,333	
중 소 기 업 청	678	560	871,103,449	③ 1,431,228,733	(구)공업진흥청
검 찰 청	7,612	8,002	262,155,660	341,735,200	
관 세 청	4,316	4,094	158,609,463	182,664,695	
농 촌 진 흥 청	2,289	2,052	227,885,327	245,828,182	
산 립 청	1,594	1,406	227,785,490	419,748,182	
병 무 청	1,610	1,482	158,417,173	124,872,722	
통 계 청	1,341	1,692	53,716,750	140,380,583	
조 달 청	1,101	935	122,267,761	134,400,900	
기 상 청	659	1,045	49,388,935	67,231,947	
특 허 청	575	953	64,355,885	130,246,000	
해 양 경 찰 청	4,786	5,082	29,000,000	316,722,104	· 98. 3. 31 발족
문 화 재 청	-	583	-	276,522,284	· 99. 5. 24 발족
식품의약품 안전청	776	794	-	58,033,476	· 98. 2. 28 발족
교 정 국	12,349	12,410	409,233,963	470,100,743	
보 호 국	1,033	1,552	62,658,000	81,326,000	
소 계	13,382	④ 13,962	471,891,963	⑤ 551,426,743	

주 1. * : (인원은 01.11 월 기준), ** : (예산액은 2000 회계연도 기준임.)

주 2. 팰호 내 숫자는 순위임.

나. 교정국과 경찰청 현황 대비표

(2001. 12. 31 현재)

구 분	교 정 국	경 찰 청	비 고
一 조 직	1. 형 태	법무부 1국	독립 외 청
	2. 중 앙 조 직	1국 1심의관 6개과	1청 1차장 6국 26개과
	3. 지 방 조 직	4개청	14개청 1차장
	4. 연 수 기 관	부설 : 법무연수원내 교정 연수부	각 대학, 학교에서 분담
	5. 부속 대학교등 기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대학교(4년제, 6급보임 교육), · 경찰종합학교(재직경찰교육), · 중앙경찰학교(신임 순경, 의경교육), · 경찰병원,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 · 경찰수사 보안 연구소, 치안연구소등
二 인원 · 결산	6. 공 무 원 정 원(명)	12,410	96,102
	7. 결 산 (천원)	470,100,743	3,480,949,413
三 대 학	8. 대학 내 전공학과	1	54
	9. 대학학생 수 (정원)	약 280	8,640
	10. 대학교수 수(")	약13(정교수 8명)	295
四 대 우	11. 9 급 초 임(원)	교도 576,100(1호봉)	순경 591,300 (1호봉)
	12. 7 급 " (원)	교위 746,700(")	경위 771,500 (")
	13. 5 급 " (원)	교정관 1,042,100(")	경정 1,016,000(")

- 주1. 대학학생 수는 정원수임. 2001년 이후 신설학교 18개교의 정원이 100%(4년간)될 때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54개 대학X40명X4학년 = 8,640명임)
2. 대학교수수는 정교수와 기타 교수(겸임교수, 강사 등)로 하되 기타 교수 수는 정교수의 50%로 추정하였음.
3. 경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는 제외하였다.
4. 통계기준과 제도상 상이점으로 대비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종합분석

(2001. 12. 31 현재)

구 分	기 준	비 교 치	근 거	비 고
1. 외청별 공무원수 대비	16개 외청	4위	상기통계표	
2. 외청별 예산액 대비	'	5위	상기통계표	
3. 경찰 공무원수 대비	경찰청	7.7배	96,102명/12,410명	
4. 경찰 예산액 대비	'	7.4배	3조 4,800억 원/4,701억 원	
5. 대학교 학과수 대비	경찰행정학과	54배	54개대학/1개대학	
6. 대학생 정원수 대비	'	31배	8,640명/280명	
7. 대학교 교수 대비	'	37배	295명/8명	03. 4.
8. 급료 대비				
1) 9급 1호봉	순경/교도	+2.6%	591,300원 / 576,100원	
2) 7급 1호봉	경위/교위	+3.2%	771,500원 / 746,700원	
3) 5급 1호봉	경정/교정관	-2.6%	1,016,000원 / 1,042,100원	
9. 인사관련제도	(경 찰 청) 있음(경찰공무원법)	(교정국) 없음	공안직군으로 일반직 공원에 준함	
1) 특별공무원법	있음	없음		
2) 15년이상특수직경사				
정년5년연장				
3) 20년이상장기근속자	있음	없음	20년이상 장기근속자 질병시 공로퇴직수당 지급	
질병시 공로퇴직수당				
4) 경찰대학교졸업자	경위임용	없음		
5) 각대학전공학과졸업자	경사이하임용	없음		
6) 각대학재학생장학금	경찰관복무	없음		
수령자				
7) 외국어능통자특별관리	있음	없음		
8) 특수직근무자계급경년	있음	없음		
연장				
	(수사, 정보, 의사, 대공)			

(주) 비교기준 및 제도상 상이점으로 대비상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각 국의 교정실태 현황

구 분	남자수용자	여자수용자	총수용인원	교도관수	(단위 : 명)		기준일자
					교도관1명당 수용자 비율	인구10만명당 수용자 비율	
호 주	19,563	1,300	20,863	6,970	3.0	108.9	2000. 6. 30
브루나이	311	22	333	118	2.8	98.4	
캄보디아	5,214	288	5,502	1,124	4.9	45.9	
중 국	1,380,307	47,100	1,427,407	286,345	5.0	109.8	
쿡아일랜드	22	1	23	19	1.2	153.3	
페 지	1,168	17	1,185	332	3.6	152.5	
홍 콩	10,366	1,201	11,567	6,514	1.8	170.1	
일 본	53,141	2,992	56,133	17,055	3.3	44.3	
키리바티	56	1	57	35	1.6	73.1	
마 카 오	817	78	895	373	2.4	207.7	
말리이지사	24,748	1,246	25,994	9,100	2.9	104.0	
뉴질랜드	5,382	266	5,648	2,750	2.1	148.1	
싱가포르	12,665	1,126	13,791	1,605	6.7	344.8	
스리랑카	16,188	662	16,850	5,139	3.3	88.7	
태 국	170,208	35,803	206,011	10,123	20.4	334.1	
통 가	67	1	68	83	0.8	55.3	
한 국	60,801	3,237	58,000	12,410	4.7	135.3	2003. 5. 7
미 국	-	-	116,376	30,208	3.9	-	1999. 3. 15
영 국	-	-	49,500	38,000	1.3	-	
캐나다	-	-	14,307	9,000	1.6	-	
스웨덴	-	-	6,425	6,406	1.0	-	
독 일	-	-	70,279	34,814	2.0	-	
프랑스	-	-	49,176	24,049	2.0	-	

자료1. 아·태 교정국 회원국(호주~한국, 17개국) : 교정(2001. 1) 아태교정국장회의참가기

(교정국 김안식 교정관) 참조

2. 기타 국가(미국~프랑스, 6개국) : 법무부 경영진단보고서(1993. 3) 서울대, 대우경제연

구소 작성 참조

마. 영국의 교도작업센터 (Prison Enterprise)

구 분	공장수	취업인원 (명)	공 정 및 생 산 품 목	비 고
1. Brush 공장	1	30	빗자루, 도색용붓, 구두솔(3)	
2. 위탁공장 (Contract Services)	71	1,500	전기조립, 회로기판조립, 부품조립, 전자제품용 회로기판 조립, 단순전산자료입력, 인공호흡훈련용 모의인형(6)	
3. Plastic 사출성형 (Plastic Insektion)	5	70	소형 Plastic 부품, 포장용비닐봉투, 원예용종묘판, 생산(3)	
4. 의류 및 직물 (Clothing, Textile)	83	4,300	각종작업복, 방화복, 조리복, 외투, 바지, 내의류, 운동복, 침구용품, 양말 등 57개 품목 생산(57)	
5. 목 공 (Wood Working)	19	700	포장용파렛트, 농산물상자, 창호, 사무용가구, 가정용가구, 농장용가구, 브러쉬손잡이, 스피커(음향용) 상자 등 생산(8)	
6. 기 계 (Engineering)	16	1,500	교도소내 철창, 사동출입문, 간이 경계벽, 도로표지판, 철제가구 농기구, 기계부품, 운동기구 등 생산(8)	
7. 인 쇄 (Printing and DTP)	11	190	단색·다원색 인쇄, 석판인쇄, 제본, 전자출판, 그래픽디자인, 자료입력, 3차원영상, 만화제작, 각종서식 등 제작, 생산(9)	
8. 제화 및 피혁 (Footwear & Leather)	3	700	작업용안전화, 운동화, 훈련화, 슬리퍼, 작업용장갑, 허리띠, 작업용 안전장구 등 생산 (7)	
9. 세 탁 (Laundry)	42	900	교도소내 침구류 세탁, 의류세탁, 위탁작업도함(2)	
10. 농 업 (Agriculture)	31	2,500	감자, 당근, 양파, 호밀, 유제품 등 생산 25% 공급, 유제품은 년간 1,000만리터 생산, 화훼류, 야채류, 생산 판매, 박람회, 전시회 참가 (103종)	
합 계	282	12,390		

자료 : 교정지 317권(2002. 9) 박원규 교위 “영국 교도관학교·교도작업센터 시찰기” (P

바. 사기 진작 주요 설문 내용 (요약)

(2002. 12)

구 분	만족도(%)				비 고
	불 만	만족	기 타		
인 사 관 리	1)승진제도의 객관성,공정성	*54.5	19.4	26.1	
	2)인사 이동의 객관성,공정성	*45.9	35.9	18.2	*없다 (P34)
	3)채용 제도 (필기 시험 위주)	80.2	17.6	2.2	
	4)여성교정 공무원 채용 의견	*52.8	45.1	2.2	필요하다 (P37)
	5)교육 훈련	52.4	40.2	7.4	(P38)
	6)교정 연수부 독립	43.5	7.0	11.0	*필요하다 (P39)
	7)대학,대학원 진학	*91.8	7.5	0.7	*확대요망 (P40)
	8)해외 연수	*90.3	9.4	0	*확대요망 (P41)
二 대 우	1)보수 수준	43.5	12.0	34.8	(P42)
	2)경찰직등과의 보수 비교	79.9	5.9	14.2	(P43)
	3)근로시간이 길어 피로	81.9	6.6	11.5	(P44)
三 위 형 도	1)사고 위험	*83.7	15.3	1.0	*많다 (P47)
	2)신체 위험	*84.2	15.8	0	*많다 (P48)
四 복 지 근 무 여 건	1)주 5일 근무제	91.2	3.7	5.1	(P49)
	2)시간외 수당 현실화	96.3	0	3.7	(P49)
	3)의료 시설 확충	94.8	0	5.2	(P49)
	4)노후장비 교체	*95.0	1.2	3.5	*필요하다 (P49)
	5)직원 1인당 수용자 인원감축	*96.2	1.0	2.8	*필요하다 (P49)
	6)사동/공장내 직원의 복수 배치	*67.8	18.1	14.1	*필요하다 (P49)
五 태 도 협 박	1)교도관 지시에 대한 순응	*69.6	1.0	29.4	*않는다 (P66)
	2)수용자의 협박, 회유유무	*53.3	46.7	0	*있다 (P67)
	3)수용자의 폭행, 폭언	*67.0	33	0	*있다 (P68)
六 기 타	1)정복지원과 사복직원간 갈등유무	*71.1	28.9	0	*갈등있다 (P69)
	2)사회적 정당한 평가 유무여하	70.9	29.1	0	(P74)
	3)가족등 주위의 평가 유무여하	62.8	37.2	0	(P75)
	4)교정직에 대한 태도(경찰/검찰/법원)	58.9	7.7	33.4	(P76)
	5)외부기관 조사시 무시 및 책임전가(인권위등)	85.5	14.5	0	(P77)
	6)언론기관의 공정한 보도 유무	83.8	1.8	14.4	(P78)
	7)교정행정의 언론홍보 필요성	*98.0	2.0	0	*필요하다 (P79)
	8)교정청 독립	*83.9	16.1	0	*필요하다 (P83)
	9)업무에 대한 보람	36.0	64.0	0	(P84)
	10)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여부	42.0	58.0	0	(P85)
	11)기회 있을때 전직의사 유무	*66.4	21.2	12.4	*전직 의사있다 (P86)

형사정책연구원(2002. 12)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공무원 워크숍 참가자 명단